

1. 개정이유

국정과제 중 ‘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(국정과제 64-1)’에 따라 소속 외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고용정책 기본법」 15조의6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여야 하나,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1,000인 이상 기업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공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며, 이에 공시제를 통해 소속 외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음.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주도 ‘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’을 공시하도록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고 별지 제1호 변경 서식에 맞춰 별지 제2호 서식도 변경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현행>

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고용형태 현황

사업체 (법인)	사업체명(법인명)		법인등록번호	
	소재지		전화번호:	
			팩스번호:	
	대표자		담당자 성명	

공시내용	구분		합계	남성 근로자 수	여성 근로자 수
	소속 근로자 수	합계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 합계	명	명	명
	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	기간제근로자 수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소속 외 근로자 수		명	명	명
	특기사항				

작성방법

※ 공시내용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합니다.

- 가.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**3월 31일(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)**입니다.
- 나. **소속 근로자 수**: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,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**전체 근로자 수**를 말합니다.
- 다. **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1호):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라. **기간제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2호):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마. **단시간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3호):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**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수**를 각각 적습니다.
- 바. **소속 외 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4호):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**사용(파견, 하도급, 용역 등)하는 근로자의 수**를 적습니다.
- 사. 특기사항: 퇴직 후 재고용, 출산 여성 등의 고용안정·고용촉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사업장 고용형태 현황

사업장	사업장명		사업자등록번호		
	소재지		전화번호:		
	대표자		업 종:		
		담당자 성명			
공시내용	구분		합계	남성 근로자 수	여성 근로자 수
	소속 근로자 수	합계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 합계	명	명	명
	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	기간제근로자 수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소속 외 근로자 수		명	명	명
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					
작성방법					

※ 공시내용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합니다.

가.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(그날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)입니다.

나. 소속 근로자 수: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하며,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.

다.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1호):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
라. 기간제근로자 수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2호):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
마. 단시간근로자 수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3호):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수를 각각 적습니다.

바. 소속 외 근로자 수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4호):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(파견, 하도급, 용역 등)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.

사.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: 한국고용직업분류표(중분류)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적되, 소속 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주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대표적인 업무를 모두 적습니다.

<개정안>

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고용형태 현황

사업체 (법인)	사업체명(법인명)	법인등록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:
		팩스번호:
	대표자	담당자 성명

공시내용	구분		합계	남성 근로자 수	여성 근로자 수
	소속 근로자	합계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 합계	명	명	명
	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	기간제근로자 수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특기사항				
	소속 외 근로자	소속 외 근로자 수	명	명	명
		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			

작성방법

※ 공시내용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합니다.

- 가.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(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)입니다.
- 나. **소속 근로자**: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,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**전체 근로자**를 말합니다.
- 다. **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1호):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라. **기간제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2호):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마. **단시간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3호):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수를 각각 적습니다.
- 바. **특기사항**: 퇴직 후 재고용, 출산 여성 등의 고용안정·고용촉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.
- 사. **소속 외 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4호):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(법인)에서 **사용(파견, 하도급, 용역 등)하는 근로자의 수**를 적습니다.
- 아. **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**: **한국고용직업분류표(중분류)**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적되, 소속 외 근로자가 소속된 **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대표적인 업무를 모두** 적습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사업장 고용형태 현황

사업장	사업장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		전화번호:	
	대표자		업종:	
				담당자 성명

공시내용	구분		합계	남성 근로자 수	여성 근로자 수
	소속 근로자	합계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 합계	명	명	명
	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	기간제근로자 수	명	명	명
		단시간근로자 수	명	명	명
	소속 외 근로자	소속 외 근로자 수	명	명	명
		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			

작성방법

※ 공시내용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합니다.

- 가.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(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)입니다.
- 나. **소속 근로자**: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하며,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**전체 근로자**를 말합니다.
- 다. **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1호):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라. **기간제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2호):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마. **단시간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3호):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수를 각각 적습니다.
- 바. **소속 외 근로자 수**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4호):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(파견, 하도급, 용역 등)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.
- 사. **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**: 한국고용직업분류표(중분류)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적되, 소속 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대표적인 업무를 모두 적습니다.